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지 방 공 기 업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19.12.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자산관리 수탁사업 대상 중 주택에 포함되는 공공복리시설 범위를 구체화하고 채용비리 근절 및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수사·감사 대상 비위행위, 명단공개 방법·절차, 합격취소 기준 등 구체적인 조치내용과 인사감사 방법을 정하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계약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준용 규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산관리대상 중 주택 범위의 명확화(안 제2조제2항)

- 1)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9호 위임에 따라 사업범위에 추가된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 등 자산관리 수탁사업 대상 중 주택에 포함되는 공공복리시설에 대한 구체적 정의 필요
- 2)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지방직영기업만이 아닌 전체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므로 조항의 명칭을 ‘지방직영기업의 범위’에서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로 변경하고
- 3) 법에서 위임한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를 자산관리수탁 대상인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공원, 주차장, 놀이터 및 체육시설 등 부대 및 편익시설로 정의

나.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안 제57조의4)

- 1)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위임에 따라 자치단체 장의 지방공사·공단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대상 비위행위, 채용비위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의 심의·의결 기구와 절차, 채용비위 관련 합격취소의 기준과 절차에 대해 구체적인 정의 필요
- 2) 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 등에 수사·감사를 의뢰하여야 하는 임원의 비위행위는 직무 관련 위법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약속,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 등) 및 성매매, 법령·정관·내규 등을 위반한 인사 개입으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등으로 정의
- 3) 채용비위행위자 인적사항 및 비위사실 공개 절차를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지자체 산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대상자의 성명·나이·주소, 소속 지방공사·공단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및 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 등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의
- 4) 채용비위 관련 합격취소 기준을 채용비위로 인하여 합격 또는 채용된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취소, 채용비위에 가담·협조하여 승진 또

는 전보된 경우 그 승진 또는 전보를 취소하는 것으로 하고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 전 당사자에 조치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

다. 채용비위 근절 등을 위한 인사운영 적정여부 감사 관련(안 제57조의5)

- 1)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8 위임에 따라 자치단체 장이 지방공사·공단에 대해 실시하는 인사감사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
- 2) 인사감사 대상은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으로 함
- 3) 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도록 함

라. 지방계약법령 준용규정 현행화 (안 제57조의6)

- 1)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 위임에 따라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현재 준용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체계가 변경되고 및 다수 조문이 개정되어 준용 규정을 현행화함
- 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2가 삭제됨에 따라 준용규정 삭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 신설에 따른 추가, 효율적 계약업무추진을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의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및 제79조(단가계약)를 추가 준용하고 제80조(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는 지방공기업의 업무와 관계없는 규정이므로 삭제, 부정당업체 및 조세포탈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법으로 상향됨에 따라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동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97조까지를 추가 준용

마.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 제외 절차(안 제58조의2)

- 1)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위임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위임
- 2) 지방공기업은 행안부장관에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확인을 요청하고 행안부장관은 관계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면제대상임을 확인·통보하도록 규정하고 면제검토시 제출서류, 신청 절차, 검토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 운용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바. 국제입찰대상 도시철도공사 현행화(안 별표1)

- 1) 별표1(국제입찰대상 도시철도공사*)에 명시된 서울메트로와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가 ‘17.5월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됨에 따른 조정

*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별표1에 명시된 도시철도공사의 235억 이상 공사, 6.3억 이상 물품·용역 계약은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지방직영기업의 범위)”를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대상인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복지 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체육·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57조의4부터 제57조의7까지를 각각 제57조의6부터 제57조의9까지로 하고, 제57조의4 및 제5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4(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공사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법, 「상법」, 「형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3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6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보에 실거나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채용비위 행위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 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공사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 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 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⑥ 법 제63조의7제6항에 따른 합격취소 등의 요구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구

2.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소 요구.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3조의7제5항에 따라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취소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 등을 결정하기 10일 전에 합격취소 등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합격취소 등의 요구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⑧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 등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의견,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격취소 등의 결과를 합격취소 등의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의5(인사감사 등) ①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57조의6(중전의 제57조의4)제1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제57조의6(중전의 제57조의4)제1항 후단 중 ““공사”로”를 ““공사”로,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산하 공사”로”로 한다.

제57조의7(중전의 제57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57조의4”를 “제57조의6”으로, ““도시철도공사””를 ““도시철도공사””로, “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를 “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58조의2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6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란 공사의 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요성 및 면제사유 등을 명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법 제6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확인하여 공사의 사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제57조의5제1항 관련)”을 “(제57조의7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서울메트로”를 “서울교통공사”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별표 1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 6. 4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57조의6, 제57조의7, 제57조의8, 제57조의9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생략) <u><신설></u>	제2조(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이란 수탁대상인 주택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과 편익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원·녹지·주차장·어린이 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사회복지시설과 그 부대시설 2. 문화·체육·업무 시설 등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② (생략) <u><신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7조의4(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①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서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위법하게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
받거나 약속하는 행위

2. 해당 공사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流用)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
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금지행위

5. 법령이나 정관·내규 등을
위반하여 채용·승진 등 인사
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로서 인사의 공정성을 현
저하게 해치는 행위

6. 법, 「상법」, 「형법」, 「조
세법 처벌법」, 「지방세기본
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에
해당 공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등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
정,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
한 중대한 위법행위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

3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사실 또는 혐의가 있어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감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에 감사 의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2항 전단에 따라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비위행위 사실 또는 혐의에 관한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63조의7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두는 인사위원회를 말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3조의7제6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관보에 실거나 제44조의2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채용비위 행위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 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공사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 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 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⑥ 법 제63조의7제6항에 따른 합격취소 등의 요구 기준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

에 합격하거나 채용된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합격 또는
채용의 취소 요구

2. 채용비위에 가담하거나 협조
하여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
견 등이 된 경우: 해당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 등의 취
소 요구.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조
치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
3조의7제5항에 따라 공사의 사
장에게 합격취소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
여야 하고, 공사의 사장은 합격
취소 등을 결정하기 10일 전에
합격취소 등의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합격취
소 등의 요구 내용 및 사유

2. 소명 기한

3. 소명 방법

4. 소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⑧ 공사의 사장은 합격취소 등

<신 설>

제57조의4(회계처리 등) ① 법 제 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하지 않는 경우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합격취소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인 의견, 증거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합격취소 등의 결과를 합격취소 등의 당사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7조의5(인사감사 등) ① 법 제 63조의8제1항에 따른 인사감사 (이하 “인사감사”라 한다)는 인사운영 전반 또는 채용, 승진, 평가 등 특정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3조의8제1항에 따라 인사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사감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제57조의6(회계처리 등) ① 법 제 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80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로,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담당자”로, “소속공무원”은 “소속직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공사의 사장”으로, “공무원”은 “직원”으로, “관계 공무원”은 “관계 직원”으로 본다.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4까지, 제43조부터 제44조까지, 제44조의2,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6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1조의3,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제75조의2,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78조의2, 제79조, 제81조부터 제89조까지, 제89조의2,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제97조의2,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0조의2, 제101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 “공사”로, “시·도지사”는 “시·도지사 산하 공

<신 설>

③ (생 략)

[별표1]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사(제57조의5제1항
관련)

1. 서울메트로
2.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3. 인천교통공사(도시철도 분야로
한정한다)
4. 부산교통공사
5.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의 사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
게 해당 사업의 명칭, 개요, 필
요성 및 면제사유 등을 명시한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
제대상 확인요구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전문가
의 자문을 거쳐 법 제65조의3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이라고 확인하여 공사
의 사장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 절차, 방
법 및 그 밖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확인에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별표1]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공사(제57조의7제1항
관련)

1. 서울교통공사
- (삭 제)
2. 인천교통공사(도시철도 분야로
한정한다)
 3. 부산교통공사
 4. 대구도시철도공사

6.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7. 광주도시철도공사

5.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6. 광주도시철도공사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연 락 처	(044) 205 - 3962